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767호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공 고

○ 공 고 제 6 7 3 호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2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673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 보 실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전 총 괄 과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 원 봉 사 과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원 봉 사 과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정 책 과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과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과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 육 정 책 과
국공립 만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보 육 정 책 과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공 원 녹 지 과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	보 건 행 정 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 획 예 산 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기 획 예 산 과

2023. 3. 24.

남 동 구 청 장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 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 4. 4.(화) ~ 4. 18.(화)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실)		7
■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18
■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24
■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38
■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총무과)		45
■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52
■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원봉사과)		58
■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		66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78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88
■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장애인과)		96
■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과)		106
■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125
■ 국공립 만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보육정책과)		146
■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공원녹지과)		166
■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 (보건행정과)		178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38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셜미디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체 특성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수정 : (안 제2조)
- 소셜미디어 매체 특성에 맞는 용어로 수정 : (안 제12조)
- 주민참여형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20조의2, 제21조 ~ 제23조)
- 현행 법률에 맞도록 수정 : (안 제3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을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포스트, 유튜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이란은”을 “이란”으로, “포함)외”를 “포함) 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소셜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소셜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블로그 기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민리포터”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영상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셜미디어 및 구 홈페이지”를 “소셜미디어”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민리포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리포터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주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리포터는 구정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리포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 제목 “(원고료 지급)”을 “(원고료와 참여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리포터가 생산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해당 주민리포터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중 “소셜기자”를 “소셜기자 및 주민리포터”로, “기자 활동”을 “활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셜기자 및 주민리포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식,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수첩, 필기구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중 “소셜채널를”을 “소셜채널을”로, “소셜민원 창구”를 “소셜민원창구”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소셜민원의 신청·접수 등)”을 “(소셜민원의 신청·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민원을 해당 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 <u>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포스트, 유튜브</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소셜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 변동 등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u>소셜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u>	4. ----- <u>이</u> 란 ----- ----- ----- ----- ----- --- <u>포함) 외</u> ----- ----- --- <u>소셜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소셜기자”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8. ----- ----- ----- -----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
을 말한다.

<신 설>

9. · 10. (생 략)

제12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
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시작 전에 소
셜미디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
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
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사람으로 블
로그 기자 등-----
-.

9. “주민리포터”란 구청장의 위
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
할 수 있는 각종 영상에서 리
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
작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
와 같음)

제12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소
셜미디어-----
-----.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로 한다.

1. (생 략)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 설>

4.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주민리포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리포터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주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리포터는 구정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

제21조(원고료 지급) (생략)

<신설>

제22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소셜기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서는 콘텐츠 기획회의 참석 등
오프라인상의 기자 활동 참여 시
예산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셜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
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소셜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개설

여야 한다.

④ 주민리포터의 해촉에 관한 사
항은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원고료와 참여수당 지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주민리포터가 생산
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를 소셜미
디어에 게시한 경우 해당 주민리
포터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여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실비변상) ----- 소셜기

자 및 주민리포터 -----

----- 활동 -----

-----.

제23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셜

기자 및 주민리포터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위촉식, 교육, 연

수 및 견학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수첩,

필기구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

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소셜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소셜채널를 활용하여 제1항의 소셜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소셜민원의 신청·접수 등)

① (생략)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을 민원업무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셜채널을 -----
소셜민원창구-----
-----.

제31조(소셜민원의 신청·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민원을 해당 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홍보실장

이현구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39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률자문료 건당 7만원 → 10만원 : 별표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인천시 자치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현황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자문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송비용 및 자문료 지급기준 (제7조, 제8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소송목적의 값(소가)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	무소가사건 및 2천만원 미만	800,000원	1. 전부 승소시 : 착수 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1,000,000원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1,500,000원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500,000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00,000원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00,000원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원	
	5억원 이상	4,500,000원	
상 소 심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		
환송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형사사건	개인단독사건	2,000,000원	없 음
	다수관련사건	3,000,000원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5,000,000원	
기 타 소송비용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감정·검증료 4. 증인여비 5. 기타비용	실 비	
법률자문료	건당	100,000원(부가세 포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비고]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급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고문변호사가 구 또는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교체된 경우에는 사건수행의 정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3. 소가는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별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인상(건당 3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인상에 따라 법률자문료 증가가 예상되나,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간 법률자문은 113건, 증가되는 비용은 총 339만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참고자료]

□ 인천시 자치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현황

구분	금액	기준	비고
중구	월 30만원	서면	부가세 별도
동구	월 25만원	서면	
미추홀구	월 20만원	서면 원칙	
연수구	건당 7만원	서면	부가세 별도
남동구	건당 7만원	서면	
부평구	서면 건당 7만원 대면 건당 10만원	서면 또는 방문	부가세 별도
계양구	기본수당: 월 25만원 초과수당 - 월 5건 이상: 10만원 - 월 10건 이상: 20만원	서면 또는 방문	부가세 별도
서구	건당 20만원	서면	부가세 별도
강화군	건당 10만원	서면	
옹진군	기본수당: 월 20만원 초과수당 - 월 5건 초과: 월 10만원 - 월 10건 초과: 월 20만원	서면 또는 방문	부가세 별도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0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우리구의 현행 직위명칭 및 분장사무를 반영하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위명칭 변경 :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 소관 부서 변경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제11조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남동구 조례 제 호

직위 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예산과장

제2조(「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동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직위명칭으로 본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1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사고	정보통신과
국방부	1.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뭍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안전총괄과, 관련부서 도로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농축수산물과
문화체육관광부	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축수산물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2. 원유 수급 사고 3. 전력 사고 4.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생활경제과 " 기업지원과 "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환경부	1.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환경보전과
고용노동부	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도로터널 사고 3. 육상화물운송 사고 4. 지하철 사고 5.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문화재청	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17조제2항제1호 관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6+α명	13+α+β명	18+α+β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명	과장급 1명	과장급 1명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 황 보 고 서 작 성 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 황 관 리 총 괄 및 상 황 분 석 평 가 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 정 지 원 팀	-	(1명) · 운영지원과 직원 1명	(1명) · 운영지원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생활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남동 및 논현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남동 및 공단소방서)
	3)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 원반 (β)	· 한국전력공사(남인천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사), 인천도시가스, KT인천지사, 대 한적십자사(인천지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 교육지원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 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 다.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17조제2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 α + β + γ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 난 상 황 총 괄 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분야별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 능복구반	· 생활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 보반	· 홍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 안전총괄과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남동 및 논현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남동 및 공단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한국전력공사(남인천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사), 인천도시가스, KT인천지사,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예산실장	2. 기획예산과장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	② ----- ----- ----- -----

성한다.

1.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

2. ~ 8. (생 략)

③ ~ ⑦ (생 략)

-----.

1. -----

----- 기획예산과장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u>기획예산실장</u>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생략) ④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u>기획예산과장</u> -----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참고자료]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정책기획국) ① 정책기획국에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이하 생략)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일부개정 2022.10.13.)
(이하 생략)

제8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및 농축수산과를 둔다. (일부개정 2022.10.13.)
(이하 생략)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다. (일부개정 2022.10.13.)
(이하 생략)

제10조(환경교통국) ① 환경교통국에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일부개정 2022.10.13.)
(이하 생략)

제11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및 공동주택과를 둔다. (일부개정 2022.10.13.)
(이하 생략)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본청에 두는 실·과의 분장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동차 관리과	1.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2.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무
	3. 시내버스(지선버스) 및 택시 운송에 관한 업무
	4. 자동차 운송 주선업에 관한 사무
	5. 자동차 창고업에 관한 사무
	6. 자가용 자동차 사용에 관한 사무
	7.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행정처분
	8. 화물자동차(용달, 개별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자동차에 대한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1. 이륜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자동차검사 관련업무 제외) 등에 관한사무
	13.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14. 자동차관리과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15.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16.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17.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무
	18.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단속에 관한 사무
	19. 무단방치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
	20. 자동차 무단방치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2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의 처리
	22.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3. 자동차 압류등록의 처리
	24.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관한 사무
	25.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
	26. 자동차의 신규등록·등록증의 교부
	27.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28.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
	29. 자동차 변경·이전·말소등록
	30.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3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32.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33.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등록 및 변경등록
	나.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라.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바.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사. 과태료 처분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1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조직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된 부대명칭 현행화 : (안 제3조제2항제7호)
- 제3조제5항과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 (안 제4조제4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를 “국군제559 방첩부대”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① (생략)	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으로 한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u>	7. <u>국군제559방첩부대</u> ----- -----
8. ~ 12. (생략)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4조(협의회회의 운영)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u>협의회는 남동구의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 동 통합방 위협의회를 분회로 둘 수 있다.</u>	<u><삭 제></u>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김 정 훈

[참고자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남동구의회의장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 인천남동경찰서장

4. 인천논현경찰서장
 5.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장
 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남동구담당관
 7.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8. 인천남동소방서장
 9. 인천공단소방서장
 10. 남동구 재향군인회장
 11. 인천보훈지청장
 12. 그 밖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남동구인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삭제 2020.5.15.)
- ⑤ 협의회는 남동구의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 동별 통합방위협의회를 분회로 둘 수 있다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2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및 기타 대학의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체험연수생 모집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및 기타 대학의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대학(종류) 범위를 확대
- 청년지원정책 및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 가능자를 청년기 본법상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화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 「고등교육법」 제2조
- 「청년기본법」 제3조
-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제2조(대상) -----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 -----. 1.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최민영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고용정책기본법

-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3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함으로써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석1동,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 소재지 변경
(별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동)
구월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8 (구월동)
구월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 (구월동)
구월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7 (구월동)
간석1동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21 (간석동)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47 (간석동)
간석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동)
간석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동)
만수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1 (만수동)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
만수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동)
만수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 (만수동)
만수5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 (만수동)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7 (만수동)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28 (서창동)
서창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43 (서창동)
남촌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32 (남촌동)
논현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 (논현동)
논현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48 (논현동)
논현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 (논현동)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변동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별도 비용 미발생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최민영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44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 7. 11. 개정,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1조~제3조)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4조)
-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5조)
-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6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행정국 민원봉사과장 박충길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시행일: 2023. 4. 1.] 제8조의3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5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 누락된 별지 제4호 서식 추가 : 제15조 기록유지
-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18조 시행규칙
- 별표 공표부서 변경과 별지 제2호 서식 문구 삭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법””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법 제9조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으로,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를 “공공기관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서식과 별지 제3호”를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출석한 위촉위원”을 “참석한 위촉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의견을 진술한 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업무계획(전부)	기획예산과	연1회	2월 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예산편성현황	기획예산과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기획예산과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결 산(전부)	재무과	연1회	결산승인일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목록, 지출금액 사용일시	총무과	월1회	10일 이내	인터넷 게재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가·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측정 결과	전 부	환경보전과	월1회	검사결과후 즉시	인터넷 게재
4.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통계연보	정보통신과	연1회	통계조사 집계 완료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인구통계	총무과	월1회		
	구정현황	총무과	수시		
5.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기획예산과	연1회	2월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6.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 사항	공개청구 내용 및 심의결정사항	민원봉사과	수시	심의회의 의결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부정불량식품 및 회수공고	식품위생과	수시	공고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단속현황	환경보전과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8. 노인·아동·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보육시설 현황	보육정책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사회복지시설 현황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노인장애인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9.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	신고포상금 예산 및 잔액	해당부서	월1회	매월말 또는 초	인터넷 게재
10.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법령기준에 따름	해당부서	수시	법령기준에 따름	인터넷 게재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구 분		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1. 중장기 종합계획	중장기종합계획서	기획예산과	연1회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수수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공공요금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결과물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결과 보고서	도로과	수시	진단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15.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도로과	수시	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안전총괄과	수시	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공사 및 물품 발주계획 목록	해당부서	수시	15일 이내	인터넷 게재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법령기준에 따름	재무과	수시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 이내	인터넷 게재
19.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심의결과	세무1과	수시	3일 이내	인터넷 게재
20.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개최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2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문	해당부서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사 유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u>인천광역시 남동구</u>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남동구</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 ----- ----- ----- ----- ----- ----- ----- -----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거 비공개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 ----- ----- ----- -----.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

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① (생략)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국장

개 대상정보-----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

----- 공공기관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

--.

⑤ 위촉직 위원-----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관부서의

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 5. 14, 일부 개정 2013. 8. 8, 2014. 10. 10, 2019. 6. 28., 2022.10.13.)

1. ~ 4. (생략)

제15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속국장-----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기록유지) -----
----- 서식, 별
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
-----.

제17조(수당 등) -----
참석한 위촉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의
견을 진술한 자-----
-----.

-----.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또는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
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행정국 민원봉사과장 박충길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의안번호	
호	2746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구월근린공원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며, 체육시설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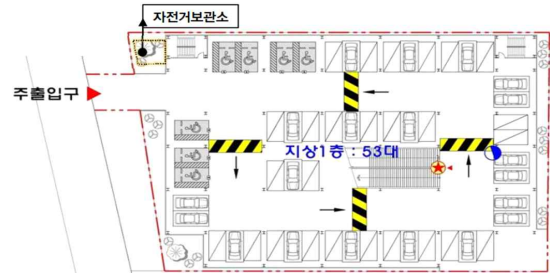
- 주차공급에 따른 주차난에 대한 주민 갈등 해소
- 보행안전 확보로 주택가 어린이·노약자의 교통사고 감소
- 불법주차 감소에 따라 도로기능 회복으로 통행속도 향상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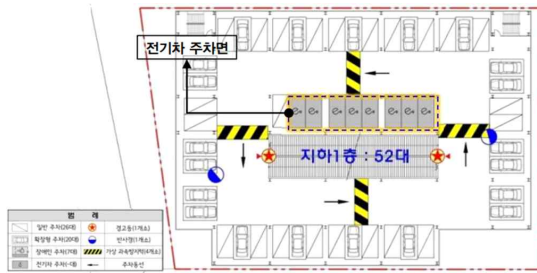
- 사 업 명 :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구월동 1246번지
- 사업기간 : 2021~2025년
- 사업규모 : 2,777.1㎡, 주차대수 158면(지하2층, 지상1층)

- 세부시설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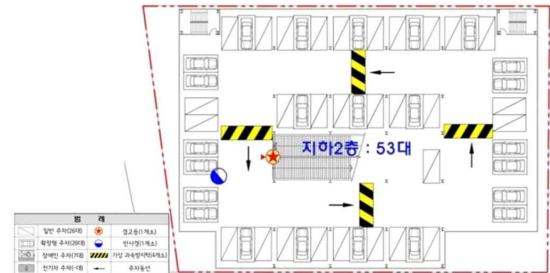
구 분	주차대수	구성비(%)	비 고
합 계	158	100	
일반형	78	49.4	
확장형	65	41.1	
장애인	7	4.4	지상1층
전기차	8	5.1	지하1층



지상1층(53대)



지하1층(52대)



지하2층(53대)

- 소요예산 : 10,000,000천원(국비 25억, 시비 25억, 구비 50억)

(단위 : 천원)

합 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10,000,000	390,000	8,692,000	689,000	229,000

□ 추진계획

- 2023. 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3. 11월 : 실시시설계획용역 추진
- 2024. 12월 : 공사 착공
- 2025. 12월 : 공사 준공

공유재산 (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서명 : 미래전략과]

위	치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 득년월일	대장가계(천원)
		공원		33,252.5	남동구	1989. 11. 20.	34,150,318
규	모	면	적	2,777.1㎡			
		주 차 대 수	158면(지하2층, 지상1층)				
토 지 매 입 비		해당없음(구유지)					
총 사 업 비		10,000,000천원(국비25억, 시비25억, 구비50억)					
사 업 기 간		2021~2025년					

[위 치 도]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성마을경로당 신축 】

의안
번호

2746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성마을경로당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취득) 필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6월
- 사 업 명 : 성마을경로당 신축
- 위 치 : 구월동 1152-14
- 용 도 : 노유자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 규 모 :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00㎡ 범위 내

층 별		실배치
지상층	2층	할아버지방 등
	1층	할머니방, 주방 등
지하층	1층	강당, 창고 등

- 사 업 비 : 1,200,000천원
(특교세 500,000천원 확보, 700,000천원 미확보)

(단위 : 천원)

공 종 별	소요예산	비고
공 사	811,000	4,055천원/㎡
철 거	19,840	
폐기물처리	48,000	
설계용역	42,000	
감리비(건축전기소방)	94,000	
기 타	178,000	(각종 인증, 시설부담금 등)
시설부대비	7,160	
합 계	1,200,000	

☐ 추진계획

- 2023. 3월 ~ 4월 : 실시설계용역 계약의뢰 및 착수
- 2023. 7월 ~ 8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3. 9월 : 건축공사 일상감사(계약심사)·계약의뢰 및 착공
- 2024. 6월 : 공사준공 및 현장정리(공사기간 약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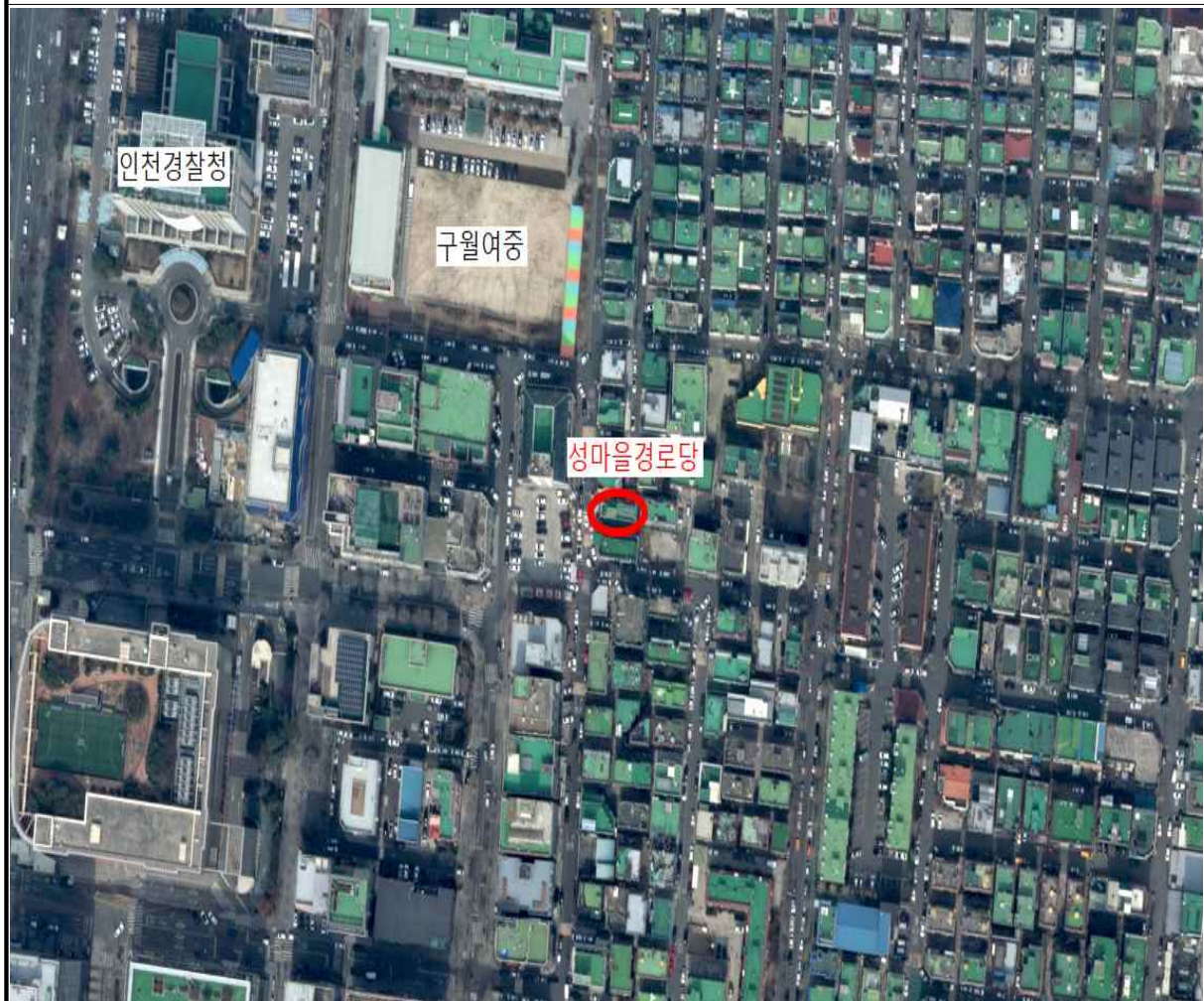
공유재산 (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성마을경로당 신축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2-14					
토	지	지	목	면 적 (m ²)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대		164.1	남동구청	1991.04.18	264,529
건	물	연	면	적	200m ² 내		
		구	조	철근콘리트조			
토 지 매 입 비		해당없음(구유지)					
총 건 축 비		금1,2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23년 01월 ~ 2024년 06월					

[위 치 도]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현황)

[남동구]

[단위 : m², 천원]

구분	사 업 명	소재지	건수	면 적	공사지가	예정가격	사유	비고
합 계								
기 본 계 획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월동 1246	1	2,777.1	-	10,000,000	주차 공간 확충	신축
	성마을경로당 신축	구월동 1152-14	1	200 내	-	1,200,000	노후	신축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기관명 : 남동구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m)	금 액	건수	수량(m)	금 액	건수	수량(m)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200	1,200,000	1	200	1,200,000	신축
		기타				1	2,777.1	10,000,000	1	2,777.1	10,000,000	신축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1	200	1,200,000	1	200	1,200,000	신축
		기타				1	2,777.1	10,000,000	1	2,777.1	10,0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수 량 (m ²)	추 가 정 격	취 득 기 (준공)	취 사 특 유	취득재산 소유자 (소관부서)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m ²)						
1	공원	구월동 1246	2,777.1	2,777.1	10,000,000	2025.1 2 예정	주차공 간 확충	남동구 (미래전략과)	신축
2	건물	구월동 1152-14	200	200	1,200,000	2024.6 예정	경로당 신축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신축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7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일부 모호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 (안 제8조)
-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시기 구체적으로 명시 : (안 제10조)
-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 (안 제2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인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건강생활지원수당”으로 한다.

제9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당”을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를 “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15조 중 “보훈회관은 (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를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남동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인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하며 6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 ----- ----- -----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 ----- ----- 건강생활지원수당-----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	제9조(수당의 신청) -----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 ----- ----- -----

여야 한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같음한다.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생 략)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설, 추석 명절이 속하는 달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⑤ (생 략)

제15조(위치) 남동구 보훈회관은 (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97-1(구월동 1314-8)에 둔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급하며,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③ -----

----- 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치) -----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

-----.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3개월 거주 요건 조항 삭제에 따라 남동구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 비용 추가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22년도 기준 월평균 5여명의 전입자 발생하였으며, 이를 구비로 환산해 보았을 경우 월평균 25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자 함.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노 송 희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7만원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8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본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직명 표기 및 단순·반복적인 조례개정 방지를 위해 계속 현행화해야 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시행)에 따라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제2조제1호, 제7조)
- 조례 조문 및 서식 용어 정비(제8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 “발급대상자 명단” → “발급대장”으로 변경
-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2021.10.1.시행)에 따라 폐지된 남동구 도시브랜드 등을 삭제하고 심벌마크로 변경(별지 제2호서식)
-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이 표기되어 있는 할인이용권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 소지가 있고 부서명칭 및 담당자 등이 변경될 때마다 현행화해야 하는 효도카드 서식 변경(별지 제5호서식)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남동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발급대상자 명단”을 “발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참여업소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효도카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안내표지]



※ 규격 : 가로 13cm × 세로 13cm

[별지 제4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대장

《 동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서명
2023-1					

[별지 제5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번호 : 남동구		동 (제 - 호)	
효도카드			
성명		생년월일	사진부착 (25mmx30mm)
주소			
연락처			
이 어르신은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로대상 어르신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청			

〈 앞 면 〉

※ 사진부착란 왼쪽하단에 효도카드 발급 담당자 간인

유의사항
1. 효도카드 참여업소 표지판 부착업소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하였으니,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효도카드 참여업소』 스티커 부착업소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 시 불편하신 사항은 거주지 해당 동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뒷 면 〉

※ 규격 : 가로 9cm × 세로 5cm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가입자”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효도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1. ----- ----- 65세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효도카드”란 가입자가 참여 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 효도카드제에 가입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 ----- ----- ----- ----- 남동구청----- ----- -.
제3조(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효도카드제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효도카드제 가입 신청자격)	제7조(효도카드제 가입 신청자격)

효도카드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는 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8조(효도카드 발급절차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효도카드 발급대상자 명
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65
세 -----.

제8조(효도카드 발급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대상-----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49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만수노인문화센터의 운영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여가복지문화 보급에 기여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만수노인문화센터 운영
- 위탁시설

시설명	소 재 지	규모	개관(예정)일	위탁기간
만수노인 문화센터	만수동 882-41번지 외 1필지	1078.35㎡ (지하2층, 지상4층)	23.09.01. 예정	'23.09.01. ~ '28.08.31.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만수노인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만수노인문화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장비, 물품 등 관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한 노인복지사업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동구가 위탁하는 사업 등
- 소요예산 : 2,961,754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및 위탁 관리)

□ 위치도 등



□ 참고 자료

- 참고1 :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1부.
- 참고2 :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문(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췌)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만수노인문화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나.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 2027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만수노인문화센터 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가정
 - 인건비 : 종사자 7명(2023년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기준)
 - 운영비 : 사업비 및 제세공과금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발생비용 : 2,961,754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보조금 1,480,867천원, 구비 1,480,887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39,567	319,610	329,790	340,410	351,490	1,480,867
시비보조금		139,567	319,610	329,790	340,410	351,490	1,480,867
세 출		279,134	639,230	659,580	680,820	702,990	2,961,754
만수노인문화 센터운영		279,134	639,230	659,580	680,820	702,990	2,961,754
재원 조달		279,134	639,230	659,580	680,820	702,990	2,961,754
의존 재원	소 계	139,567	319,610	329,790	340,410	351,490	1,480,867
	보 조 금						
	국비						
	시비	139,567	319,610	329,790	340,410	351,490	1,480,867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 교부금						
	소 계	139,567	319,620	329,790	340,410	351,500	1,480,887
구 비	구 비	139,567	319,620	329,790	340,410	351,500	1,480,887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만수노인문화센터 인건비 지원액 산정

- 「2023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상률(1.6%) 적용

[참고자료1]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 만수권역에 개관예정인 만수노인문화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전문성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II 추진방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행정의 투명성 향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하여 2개 법인 이상이 신청하여야 함
 - ※ 단독 신청의 경우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추가 신청자 없이 단독신청의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적의 수탁자 선정

Ⅲ 시설현황

○ 대상시설 : 만수노인문화센터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운영공간
만수노인문화센터	만수동 882-41번지 외 1필지	1078.35㎡ (지하2층/지상4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건강증진실, 강당 등

○ 위탁기간 : 2023. 9. 1. ~ 2028. 8. 31. (5년) 예정

○ 지원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수탁재산의 위탁료 및
인천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지원

○ 인력구성 :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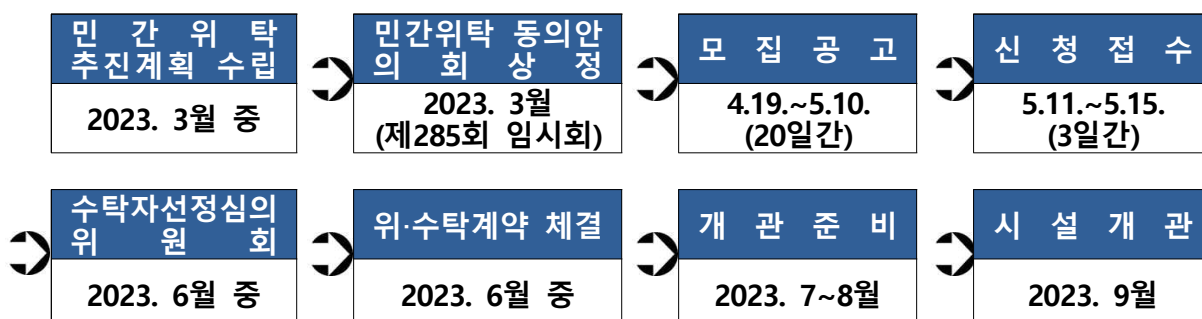
계	센터장	과장	사회복지사	사무직	영양사	관리기사
7	1	1	2	1	1	1

○ 위탁사무

- 만수노인문화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장비, 물품 등 관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의거한 노인복지사업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동구가 위탁하는 사업 등

Ⅳ 추진계획

□ 추진일정



①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시기 :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 4. 4. ~ 4. 18.)

<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

-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 ▶ 추진 필요성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효율적인 사무운영으로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 ▶ 소요예산 : 279,134천원 (인건비 159,324천원 / 운영비 119,810천원)
(2023년 9월 개관 기준 2022년 운영비 예상액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②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3. 4. 19. ~ 5. 10. (20일간)
- 접수기간 : 2023. 5. 11. ~ 5. 15. (3일간)
- 접수장소 : 남동구청 1층 노인장애인과 (☎032-453-2252)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 접수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 단독 신청 시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1개 법인이 신청할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단,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재공고함.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법인 정관

상 목적사업에 규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시설 수탁운영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인
- 보조금 지원 외에 만수노인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운영보조금의 일부에 대한 자부담률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의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처리함.

○ 제출서류 및 서식 : [붙임2] 참조

- ㉠ 수탁운영신청서 ㉡ 법인 현황 관련 서류
㉢ 법인자산현황 ㉣ 시설운영계획서
㉥ 위탁운영 및 재정부담 의결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및 심의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위원회 구성 : 8명

- 당 연 직 : 2명 (부구청장, 복지국장)
- 위 축 직 : 6명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노인단체 등)
- 간 사 : 1명 (노인장애인과장)

* 수탁자 선정 후 자동해산

구 분		인원	대 상 자	비 고
계		8명		
위원장	공무원	1명	부구청장	당연직
위 원	공무원	1명	복지국장	당연직
	공익단체	2명	노인단체, 시민단체 대표	위촉직
	관련 전문가	4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 수탁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사전검토자료 발송

- 대 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 시 기 : 심사일 3~5일 전까지 위원별 개별 송부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6월 중
- 심의내용 : 심의기준(안) 결정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심의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에 따른 심사평가
 - 법인 발표자로부터 5분~10분간 시설 운영 의지 등 발표 청취
 - 법인대표 또는 각 시설장(내정자)에게 운영 전망 등 질의응답
- 참석수당 : 100천원 범위 내 (1인 기준 / 공무원 제외)

구분	참석수당		비고
	기본(2시간)	추가	
지급액	70,000원	30,000원	초과는 1일1회만 지급

○ 위원회 심의기준(안)

구분	계	수탁법인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재정 능력	지역사회 협력관계
배점	100점	20점	45점	25점	10점

* 세부심사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심의 기준별 항목 간 배점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수탁법인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가장 높은 점수(소수점 두 자리 수)를 획득한 법인 선정

➤ 심의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고점수가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만 재심의
- 신청법인 사업설명회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포기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 여부 결정

④ 선정결과 안내 및 위탁계약 체결

- 선정결과 안내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법인 개별 안내
- 위탁계약 체결 : 2023. 6월 중
- 시설 개관준비 : 2023. 7~8월
- 시설 위탁운영 : 2023. 9월 ~ 2028. 8월

V

행정사항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촉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 명단 보안 철저
- 신청법인 사업설명 발표자료(PPT 등) 사전 점검

- 붙임 1. 민간위탁 동의안
2.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안)
3.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심사자료(안)
4. 위수탁협약서(안). 끝.

[참고자료2]

남동구 공고 제2023 - 호

만수노인문화센터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만수노인문화센터』시설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4. .

남 동 구 청 장

1. 위탁시설

시 설 명	만수노인문화센터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2-41번지 외 1필지
운영공간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건강증진실, 강당 등
운영인력	7명 (시설장 1명, 종사자 6명)

2. 위탁기간 : 2023. 9. 1. ~ 2028. 8. 31.(5년)

3. 종사자수 : 총 7명(2023년 기준)

4. 위탁금액 : 279,134백만원(2023년 9월 운영기준)

-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
- 경로식당 인건비 및 운영비, 어르신 상담·사례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등

5. 위탁사무

- 만수노인문화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장비, 물품 등 관리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한 노인복지사업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동구가 위탁하는 사업 등

6. 응모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고 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수탁운영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인
- 보조금 지원 외에 만수노인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운영보조금의 일부에 대한 자부담율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 최소충족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을 받는 법인으로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최근 10년 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해지된 법인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이 취약거나 운영실적 등에 비추어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 '안전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 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수립한 경우

7.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관련법규, 제반법령 및 조례, 위·수탁 협약서에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 또는 준용하여야 함.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제시하는 협약서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8.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3. 4. 19. ~ '23. 5. 10.

나. 접수기간 : '23. 5. 11. ~ '23. 5. 15.(10:00~18:00)

※ 접수 가능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마지막날은 17:00까지 접수 마감함.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여가시설팀(1층)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문 의 : 노인여가시설팀 김소애 주무관(032-453-2252)

라. 제출서류 : 책자형태로 총 9부(원본 각1부, 부분 각8부)

구분	책자 ① (200p이내)	책자 ②
제출 내용	·신청서(서약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심사의뢰서	·법인정관 ·법인이사회 회의록 및 소집통지서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개인정보이용 및 동의서 ·심사의뢰서 증빙서류 일체 ·책자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자료 등
제출 방식	책자형태, 각 15부(원본1부, 사본14부) ※페이지 명기, 견출지 부착	
비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모든 서류일체는 전자파일(USB 저장) 제출	

9.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심의일시 : 2023년 6월중(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수탁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실시

다. 심사기준

구분	계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배점	100점	45점	10점	45점

라. 최종선정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 득점자

1순위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결정

마. 선정결과 : 심의 후 선정결과 남동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바. 향후일정

- 선정 시 절차안내에 따라 계약체결 후 개관준비단 운영
- 무응찰 및 단독 신청의 경우 10일간 재모집공고 실시예정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이나 최소충족기준 미달 시 수탁법인 재공고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수탁기관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라. 책자제작, 작성방법 등 신청서류 제출 전 구체적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협의 필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노인장애인과의 ☎ 032-453-2252)로 문의

붙임1

만수노인문화센터 위탁운영 법인 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20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5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5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재정능력 합계	1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5
	3.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8
	4. 안전관리 계획	12
	사업능력 합계	45
총계	3개 부문 10개 항목	100

[참고자료3]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른다.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50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운영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설치(개원)일	위탁기간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7단지 (가칭)	선수촌로 7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관리동)	476.5㎡ (지상2층)	최대 85명	23.09.01. 예정	'23.09.01. ~ '28.08.31.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4,795,185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췌)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지원비는 2023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 2027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 비용추계의 가정 : 정원 85명, 현원 85명 가정
 - 23년도 1·2월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연령별 아동 비율에 따라 아동·반 구성
 - 반 구성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구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발생비용 : 4,795,185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4,195,784천원, 구비 599,401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796,189	817,876	840,214	863,223	878,282	4,195,784
국시비보조금			796,189	817,876	840,214	863,223	878,282	4,195,784
세 출			909,954	933,770	958,301	983,568	1,009,592	4,795,18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909,954	933,770	958,301	983,568	1,009,592	4,795,185
재원 조달			909,954	933,770	958,301	983,568	1,009,592	4,795,185
의존 재원	소 계		796,189	817,876	840,214	863,223	878,282	4,195,784
	보 조 금	국비	486,384	500,282	514,598	529,343	544,531	2,575,138
		시비	309,805	317,594	325,616	333,880	333,751	1,620,646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13,765	115,894	118,087	120,345	131,310	599,401
	구 비		113,765	115,894	118,087	120,345	131,310	599,401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분담, 민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적용
- 현재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직위별 평균 호봉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 신규 공급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운영위탁)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

(2023. 2. 28. 기준)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정원	현원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7단지 (가칭)	선수촌로 7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관리동)	476.5㎡ (지상2층)	최대 85명	-

- 위탁(예정)기간: '23. 09. 01. ~ '28. 08. 31.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IV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3. 4월 ~ 5월중 (20일 이상)
- 공고내용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월중 (7일 이상)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고용된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1.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보건복지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V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23. 4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23. 4월 ~ '23. 5월
-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심사 절차 이행: '23. 5월중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23. 6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23. 6월중

- 붙임 1.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참고자료2]

남동구 공고 제2023 - 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인가일	비고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7단지 어린이집 (가칭)	선수촌로 7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관리동)	476.5㎡ (지상2층)	최대 85명	-	2023.9월 개원예정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 '23. 09. 01. ~ '28. 08. 31.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3. 4. 19. ~ 2023. 5. 9.

○ 접수기간 : 2023. 5. 3. ~ 2023. 5. 9.

○ 접수장소 :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7부 (원본 1부, 사본 16부)
 -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은 신청 가능)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

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3]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

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국공립 만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국공립 만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2751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제279회 임시회(22. 6월)에서 위탁 동의받았던 만수어린이집에 대하여 현 위탁체(원장 홍진희)의 사임원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23. 7. 31.)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국공립 만수어린이집 운영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설치(개원)일	위탁기간
만수 어린이집	담방로 105 (만수1동, 만수주공7.8단지 관리동)	254.74㎡ (지상1층)	30명	'17.12.1.	'23.08.01. ~ '28.07.31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1,718,940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췌)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국공립 만수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지원비는 2023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 2027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발생비용 : 1,718,94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1,503,573천원, 구비 215,367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86,182	293,653	301,348	309,273	313,117	1,503,573
국시비보조금		286,182	293,653	301,348	309,273	313,117	1,503,573
세 출		326,752	335,018	343,533	352,302	361,335	1,718,94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326,752	335,018	343,533	352,302	361,335	1,718,940
재원 조달		326,752	335,018	343,533	352,302	361,335	1,718,940
의존 재원	소 계	286,182	293,653	301,348	309,273	313,117	1,503,573
	보 조 금						
	국비	175,328	180,237	185,293	190,500	195,865	927,223
	시비	110,854	113,416	116,055	118,773	117,252	576,350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40,570	41,365	42,185	43,029	48,218	215,367
	구 비	40,570	41,365	42,185	43,029	48,218	215,367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평균호봉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 위탁계약 해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운영위탁)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

(2023. 2. 28. 기준)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만수	담방로 105 (만수1동, 만수주공7.8단지 관리동)	254.74㎡ (지상1층)	30명	27명	홍진희	'18.04.12. ~'23.07.31.

- 위탁(예정)기간 : '23. 08. 01. ~ '28. 07. 31.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IV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3. 4월 ~ 5월중 (20일 이상)
○ 공고내용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월중 (7일 이상)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고용된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1.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보건복지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V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3. 4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23. 4월 ~ '23. 5월
-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심사 절차 이행: '23. 5월중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23. 6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23. 6월중

- 붙임 1.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참고자료2]

남동구 공고 제2023 - 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인가일	비고
만수 어린이집	담방로 105 (만수1동, 만수주공7.8단지 관리동)	254.74㎡ (지상1층)	30명	'17.12.1.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만수 : '23. 08. 01. ~ '28. 07. 31.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3. 4. 19. ~ 2023. 5. 9.

○ 접수기간 : 2023. 5. 3. ~ 2023. 5. 9.

○ 접수장소 :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7부 (원본 1부, 사본 16부)
 -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은 신청 가능)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

조약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 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 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3]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

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목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2752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남동산단근린공원(논현동 445번지) 내 지하공영주차장(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목 적: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의 일환으로 남동공단근린공원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활성화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사 업 명: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남동구 논현동 445(남동산단근린공원)
- 사 업 비: 25,847백만원(국비50%, 시비50%)
- 사업내용: 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주체: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
- 규 모: 공원전체면적 78,328.9㎡ 중 사용면적 7,384.6㎡
연면적 11,693.84㎡, 지하2층, 381면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11,693.84	
지상1층	D동	공용화장실	126.91	
			98.68	
지하1층	H동	주차장	5,667.85	
지하2층			5,800.40	

☐ 동의(승인) 사항☐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항제11호

☐ 동의(승인)내용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참고 사항☐ 행정재산(지하권) 무상사용 승인[남동공단근린공원]

- 2022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참고자료

- 『남동근린공원 내 주차장 설치 관련 공원부지 공유재산 운영 계획
(안)』 1부
- 합의서 1부
- 관련 법령 1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25,847백만원<국비50%/시비5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분(용도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신 축	6,600,000	11,407,000	7,840,000	-	

작성자 :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참고자료1]

남동공단근린공원 내 주차장 설치 관련 공원부지 공유재산 운영 계획(안)

인천시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의 일환으로 남동근린공원(논현동 445-구유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용 승인 협의 요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 및 공유재산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 인천시 산업진흥과-870(2022. 08. 22.)호 관련 사항임
 - 토지 무상사용 승인 등 협조요청(남동구 논현동 445번지 일원)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 ☐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그 간 추진 현황

- ☐ 2018. 09.: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안) 의견 조회(시 산업진흥과)
- ☐ 2018. 10.: 의견 회신(남동공단지원사업소) 지하주차장 위치 변경요청
- ☐ 2019. 09.: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고-252호)
- ☐ 2020. 03.: 의견 조회(시 산업진흥과)
- ☐ 2020. 09.: 의견 회신(남동공단지원사업소) 행정절차 이행 전 사전협의 요청
- ☐ 2020. 12.: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 ☐ 2021. 04.: 의견 조회(시 산업진흥과)
- ☐ 2021. 04.: 의견 회신(남동공단지원사업소) 시설물 조정 및 시설추가 요청
- ☐ 2022. 06.: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및 승인 고시(인고-153호)

3 공원현황

- ☐ 공 원 명: 남동공단근린공원
- ☐ 위 치: 논현동 445번지
- ☐ 면 적: 78,328.9㎡
- ☐ 최 초 결 정: 1985. 02. 09. (건고 제54호)
- ☐ 조 성 년 도: 1992. 08.(공용개시 1992. 11.)
- ☐ 관리운영기관: 남동구(남동산단지원사업소)

4 사업개요

- ☐ 목 적: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의 일환으로 남동공단근린공원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활성화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 사 업 명: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 위 치: 남동구 논현동 445(남동공단근린공원)
- ☐ 기 간: 2022. ~ 2024. 12.
- ☐ 사 업 비: 25,847백만원(국비50%, 시비50%)
- ☐ 사업내용: 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 ☐ 사업주체: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 ☐ 규 모: 공원전체면적 78,328.9㎡ 중 사용면적 7,384.6㎡
연면적 11,693.84㎡, 지하2층, 381면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11,693.84	
지상1층	D동	공용화장실	126.91	
	H동	주차장	98.68	
지하1층			5,667.85	
지하2층			5,800.40	

□ 공원 내 주차장 조성 위치



5 공유재산(구유지) 관리·운영 세부 추진계획

인천시(산업진흥과) 요청내용

■ 토지(지하권)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및 합의(승낙서, 합의서)

가. 위 치 : 남동구 논현동 445(남동공단근린공원)

나. 면 적 : 7,384.6㎡(토지소유 : 남동구청)

1. 행정재산(토지) 사용·수익 허가 법적 검토

주요내용	법적근거	검토결과
1) 공유재산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도 포함
2) 사용수익 허가여부	법 제20조 제1항 영 제12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가능
3) 사용수익의 허가방법	영 제13조	수익(隨意) 가능
4) 사용수익 허가기간	법 제21조 제1항, 제5항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5년마다 1개월 전 갱신 가능
5) 사용료 감면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사용료 면제 가능
6)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법 제13조 / 영 제9조 제1항 제11호	지하공영주차장 설치가능 원상회복 미이행 승인

2. 공유재산(구유지) 사용·수익 등 절차

가.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재무과)

- 상정사유: 공유 행정재산 무상사용 승인 허가
- 2022년 10월(예정) 제8회 공유재산 심의회

나. 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관련 합의

- 사용합의서 작성 및 송부 : 남동구 → 인천광역시
- 합의내용: 토지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주차장) 축조 관련 해당 부지 내 시설의 사용 및 관리 범위 포함

다. 의회 의안 동의(안) 상정

- 상정사유: 영구시설물 축조물 설치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 (합의서 첨부)



3. 공원 리모델링에 따른 의견제출

- 사용 승인 공원면적(7,384.6㎡)에 대한 공원리모델링 시설 설치 관련 지속 협의 및 의견제출

6 행정사항

-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재무과] ----- 2022년 9월 한
- ☐ 토지 무상사용 승인 및 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합의- 2022년 11월 한
[남동구 → 인천시]
- ☐ 의회 의안 상정 ----- 2022년 12월 한

[참고자료2]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지하권)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남동구청(이하 “갑” 이라한다)과 인천광역시(이하 “을”이라한다)는 “을”이 시행하는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갑”의 공유재산(논현동 445)의 무상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에 편입되는 “갑”의 공유재산(논현동 445)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에 의거 토지 소유자인 “갑”과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을 축조하고자 하는 “을” 간의 토지 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표시)

- 소재지 : 남동구 논현동 445
- 지 목 : 공원
- 허가면적 : 78,328.9㎡(사업부지 면적7,384.6㎡) * 공원 내 지하
- 소유자 : 남동구

제3조(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 및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용 도 : 지하공영주차장
- 위 치 : 남동구 논현동 445(남동근린공원 내)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간(2025년 준공 예정)
- 사업규모(축조물) :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

용도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11,693.84	
공중화장실	1층	1동	공중화장실	126.91	개축
지하주차장	1층	1동	공영주차장	98.68	신축
	지하1층		공영주차장	5,667.85	신축
	지하2층		공영주차장	5,800.40	신축
	소계			11,566.93	

*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연면적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증가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

제4조(사용 및 관리 범위) “을”의 사용 및 관리 범위는 지하공영주차장(영구시설물) 설치 및 사용에 한한다.

제5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득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한다.

제6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을”은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합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승인사항을 위배한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 ※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갑”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승인사항의 위반으로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을”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갑”의 직원 (“갑”소속의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미리 설치한 원상이 변경된 시설물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을”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을”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을”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할 때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을”은 허가재산에 대해서 “갑”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 및 효력) 본 합의사항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합의서는 남동구청장과 인천광역시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청장인
2023. 2. .

시장인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인)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인)



[참고자료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

의안번호	2753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설정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의회에 계획수립 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 현황, 건강수준 분석
-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
-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관리

☐ 본 문 : “별첨”☐ 참고 자료

- 「지역보건법」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 찬 우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의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의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2754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153,302,066	1,088,783,270	64,518,796	5.93%
일	반 회 계	1,132,425,635	1,072,375,834	60,049,801	5.60%
특	별 회 계	20,876,431	16,407,436	4,468,995	27.24%
주 차 장	의 료 급 여 기 금	1,485,695	1,443,100	42,595	2.9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900	18,9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496,436	496,436	0	0.00%
	지 하 수 관 리	286,477	263,600	22,877	8.68%

☐ 첨부서류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755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4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출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 남동구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총 6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2개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2년도 말 현재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현재액 [㉡] =([㉠])+([㉢])-([㉣])	증 감 [㉤] =([㉡])-([㉠])
		수입 [㉢]	지출 [㉣]		
계	39,433,719	2,709,788	4,757,376	37,386,131	△2,047,5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1,576,292	741,916	798,520	21,519,688	△56,6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3,292	762	203,180	874	△202,418
재난관리기금	5,749,095	1,494,410	2,303,305	4,940,200	△808,895
중소기업육성기금	4,974,425	121,455	550,000	4,545,880	△428,545
사회복지기금	4,806,065	166,386	342,878	4,629,573	△176,492
식품진흥기금	1,506,903	160,117	231,493	1,435,527	△71,376
옥외광고발전기금	617,647	24,742	328,000	314,389	△303,258

○ 자금수지총괄 변경

(단위 : 천원)

수입/지출계획				
기금명	예산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중소기업육성기금	555,880	414,572	141,308	
사회복지기금	822,451	681,364	141,087	

□ 첨부서류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첨부)